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온라인) 회의록

2020. 3. 16.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20. 3. 12.(목)

-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 2020. 3. 5. ~ 2020. 3. 11.(7일 간)
- 온라인 투표: 2020. 3. 12. ~ 2020. 3. 16.(5일 간)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II. 의사개요

1. 2021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토론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시설담당관실 의견대로 청원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을 1순위로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로 변경하는 안에 찬성함
- 울산지방법원 증축에 관하여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 내용대로 별관증축으로 변경하고, 밀양지원과 사이의 사업순위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2021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



나. 결정 사항

- 2021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과 관련하여 신축 및 중축사업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 신축사업
 - ① 창원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② 춘천지방법원, ③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④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중축사업
 - ① 울산지방법원, ②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순으로 하되, 울산지방법원 중축을 옥상 중축에서 별관 중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함

2. 관사예산 배정대상 및 순위(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토론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비연고 법관의 관사배정 대상법원에 수원고등법원을 추가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함
- 다만, 이 경우 “법원관사 등 배정기준” 중 연고법관에 관한 규정 제1항 “근무지”를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를 제외한 서울 및 경인권에 주택을 소유한 법관은 비연고 법관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수원지방법원 근무 법관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을 비연고 법관 배정 대상 법원에 포함시킨 취지(서울, 경인권 외의 지방권 소재 고등법원 고법판사들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발령 난 경우를 예상하여 둔 경우)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비연고 법관의 관사배정 대상법원에 수원고등법원을 추가하되, “법원관사 등 배정기준” 상의 ‘연고법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동시 개정할 것을 제안함. 이 경우 적용대상 법원, 기관은 수원고등법원 이외에도 종전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도 포함되게 될 것임
 - [“법원관사 등 배정기준”에서 예시한 ‘연고법관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정안]
① 근무지(법원 또는 지원 소재 시·군, 다만 서울 및 경인권 소재 법원의 경우는



서울 및 경인권)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 비연고의 개념을 ‘인사발령사 부임지에 주소지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와 반대 개념으로 ‘연고법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시만 들고 있는데, 최한돈 위원의 의견과 같이 예시 규정을 개정하거나 근본적으로 비연고의 개념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현재의 비연고 개념 또는 연고법관 예시 규정에 따르는 경우 관사예산 재배정에 관한 실질적 문제가 있는지, 실질적 문제는 없고 규정 정비의 문제만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결정사항

- 관사예산 배정대상과 관련하여, 지역법관에 대한 예외적 관사배정 대상 수도권지역 법원에 수원고등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법원판사 등 배정기준’ 중 연고법관 또는 비연고법관 개념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4차 회의 회의록 작성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처리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0. 4. 9.(목) 10:00
- 장소: 대법원

(끝)